

US IRS, 특허기부 관련 조세 탈루 방지에 나서다

미 국 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s)은 작년에 대학이나 연구소에 특허를 기부함으로써 과도하게 공제(deduction)를 받아온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미 수 천만달러의 공제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에는 그 시행의 폭을 넓혀서 부적절한 공제를 한 기업뿐 아니라 그 거래를 주선한 회계법인이나 평가인등도 처벌하려고 한다고 구랍 22일 Mark Everson 미 국세청장은 밝혔다. Everson 국세청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로써, 과대 기술평가(inflated appraisals)와 특허에 대한 편중적인 이익부여 등을 지적했다.

특허와 관련된 기업의 부당한 세금전략을 추적하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M-CAM사의 David Martin사장은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이 분야에 소홀했기 때문에 특허기부제도가 일종의 cash-cow였으나 이제부터는 국세청이 법을 집행할 의지와 방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진행되어진 모든 특허기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의 중요한 특허기부자에는 1999년에 펜실

베니아 주립대학, 아이오와 주립대학 그리고 버지니아 공대에 약 6천4백만 달러 가치의 특허를 기부한 DuPont사와, 2001년에 Mid-American Commercialization Corp.에 5천만달러 가치의 특허를 기부한 Caterpillar사 그리고 2002년에 미시간 주립대학에 4천9백만달러 가치의 특허를 기부한 Kellogg사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특허기부를 절세 전략으로 기업에 제공하고 그 거래에 있어서 조세에 관한 의견을 제공한 PWC나 Ernst & Young사와 같은 회계법인들도 그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 국세청, 부적절한 공제를 한 기업·그 거래를 주선한 회계법인이나 평가인 등도 처벌

이러한 특허기부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세청은 특허와 관련된 조세 실시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유의하고 있다. 하나는 역외 회사(off-shore company)로 특허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려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특허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조세특례(tax-credit)에 있어서 그 연구가 그 혜택을 받을 만한 진실로 새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고 있다.

출처 Forbes.com

창의적인 발명하나 살기편한 멋진세상

미국, 고비용의 법률 소송 없이 나쁜 출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제언

연 방법원들과 미국특허상표청(이하, USPTO)은 특허성에 의문이 갔던 유전자, 소프트웨어 및 영업방법과 같은 영역에까지 특허 보호를 허여해 주는 범위를 확대해 주어왔다.

문제가 있는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는 심사에 관여된 심사관의 필요 자격요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특허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결정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들에 의해서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허대상이 확대가 된 이상, 소송 없이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만 특허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재심은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특허권자가, 존재하고 있는 특허범위를 넓히는 데 이용되고 있다.

Stanford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Jonathan D. Levin과 Yale 대학의 총장인 Richard C. Levin은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서 특허(Patent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로 명명된 국가 연구 위원회 보고서에서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기본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간단하고 저비용의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특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유럽과 비슷한 제

도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 후 새로운 검토는 특허가 지지를 받을지 무효화 될지에 대한 걱정들을 제거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 특허 이의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1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의 특허이후 간소

화된 이의절차는 보다 빠르게 많은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연방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혁신적으로 등록후 검토절차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USPTO도 주로

현행법,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만 특허에 대한 재심을 허용

내부적으로 개선된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특허후 검토절차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더욱 더 많은 문제제기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생명공학 및 의약품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1%의 소송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유럽에서는 생명공학과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8%이상 이의신청이 있었다. 그러나 Levins는 새로운 특허 후의 검토 절차는 소송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진정한 기술혁신을 한 특허에 대하여만 독점·배타권을 수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http://www.sciam.com>